

제2절 뉴질랜드 관세양허표

1. 1988년도 뉴질랜드 관세법과의 관계: 이 부속서 제2절에 규정된 품목은 일반적으로 1988년도 뉴질랜드 관세법(이하 “관세법”이라 한다) 제9나절 제2항에 규정된 상응하는 품목으로 표현되며, 이 부속서 제2절의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부속서 제2절의 품목에 대한 해석은 관세법에 의하여 규율된다. 이 부속서 제2절에 규정된 품목이 관세법 제9나절 제2항에 규정된 상응하는 품목과 일치하는 한도에서, 이 부속서 제2절의 품목은 관세법상의 상응하는 품목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.
2. 기준관세율: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09년 1월 1일 발효중인 뉴질랜드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.
3. 양허단계: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2.4조제2항에 따른 뉴질랜드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.
 - 가. 단계별 양허유형 “0”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,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.
 - 나. 단계별 양허유형 “3”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.
 - 다. 단계별 양허유형 “5”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.
 - 라. 단계별 양허유형 “7”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,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.
4. 품목에 대한 기준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뉴질랜드 양허표에 표시된다.
5.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리거나,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경우, 최소한 가장 근접한 뉴질랜드달러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.
6. 이 양허표의 목적상, “이행 1년차”란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.

7. 이 양허표의 목적상,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